

(參 照)

첫째, 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 별표1(제증 명확인발급사항-38종)을 보면 建築物管理臺帳謄本 1건당 手數料가 350원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6월 1일자 (建設部令 第507號)로 制定 公布된 建築物臺帳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第11條(手數料) 1項 規定에 의거 建築物 管理臺帳 謄本 발급수수료가 500원으로 인상 되고, 建築物 管理臺帳 抄本 발급수수료 400원 및 建築物 管理臺帳 열람수수료 200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條例를 改正하여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妥當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다만, 手數料 引上和 手數料 項目 신설 (2종)로 해당구민에게 다소 경제적 負擔을 주는 반면 이에 다른 稅入이 增大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건축물관리대장발급수수료		증 액
연 간	개정후 연간	16,546,800원
38,609,200원	55,156,000원	

.....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基 質疑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質疑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表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永登浦區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에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會議順序를 다시 바꿔서 第4項 永登浦區象徴物制定同意의件에 대해서 楊雲燮委員에 대한 總務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하시지요.

○總務局長 金榮俊 象徴物開發委員會를 構成하는 條例가 없기 때문에 우리區에서 任意로 했습니다.

그리고 所要豫算은 아까 追更豫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本豫算에서 執行이 되었습니다.

○徐興善 委員 그러니까 어느 項目에서...

○總務局長 金榮俊 收用費 및 手數料에서 되었습니다.

○徐興善 委員 收用費...

○總務局長 金榮俊 收容費 및 手數料. 거기에서 부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區 象徴物開發 해가지고 마스코트, 휘장등 해서...

○楊雲燮 委員 答辯 다 하신겁니까?

○總務局長 金榮俊 네.

○委員長 金東基 말씀하세요.

○楊雲燮 委員 象徴物制定 根據 條例가 없다고 하려는 여태까지 條例없이 區廳에서 任意대로 行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조금 아까 우리가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設置運營條例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필요없이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그냥 區廳에서 任意대로 運營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이런 條例를 구태여 만들어서 이런 委員會를 設置를 하고 어떤 것은 區廳에서-區議會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임의대로 設置해서 運營을 하고 어떤 것은 이런 條例案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條例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根據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局長 金榮俊 條例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會計法上 하나의 法律的 效力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條例를 制定하는 것이고 象徴物 같은 것은 法律的 效力을 갖는 性格이 아니고 또 住民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그런